

|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5080     |
| 의 퇴 인  | 김민전 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11.15. |
| 추 계 번호 | 24C4701     |

#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조(목적)                       |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·보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(財源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2조(정의)                       |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>1. “기준재정수요액”이란 지방교육·보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<br>2. “기준재정수입액”이란 교육·보육·과학·기술·체육, 그 밖의 학예(이하 “교육·학예”라 한다)에 관한 모든 재정 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3  | 안 제7조<br>(기준재정수입액)              | (제1항)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·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예상액으로 한다. 단, 제15조에 따른 전입금은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11조<br>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         |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및 <u>보육기관</u> 의 보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5  | 안 제15조<br>(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) | (제1항)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이 법 공포 당시(법률 제○○○○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)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 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<br>1.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비. 다만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국고지원에 대응한 지방비는 제외한다.<br>2.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영유아 보육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경비. 다만,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특수한 여건에 기반한 시책사업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<br>3. 영유아 보육 사무의 수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경비<br>(제2항)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같은 항에 따른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공포 당시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규정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조(목적)<br>안 제2조(정의)<br>안 제7조(기준재정수입액)<br>안 제11조<br>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<br>안 제15조<br>(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<br>관한 특례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<sup>1)</sup>
- 교육부는 '22년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추진을 포함하고, '23년 1월 '유보통합 추진방안'을 발표한데 이어, '24년 6월 “유보통합 실행 계획(안)”을 발표하였으며, 동시에 개정 「정부조직법」 시행으로 보육사무를 이관받음
  - 개정안은 교부금의 목적에 ‘보육기관’의 설치·경영을 추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정의에 ‘보육’을 추가하면서 ‘영유아 보육’을 위한 보조사업 경비와 자체편성 경비 및 관련 인건비 등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였으며,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「영유아보육법」 (의안번호 제2205079호)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(의안번호 제2205081호)에서는 ‘영유아 보육’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사무<sup>2)</sup>로 하면서 교육감을 보육계획의 수립, 어린이집 확보·설치, 보육교직원 임면, 어린이집 폐지·휴지·재개

1)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

2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(의안번호 제2205081호)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8의2.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

등의 주체로 규정함

- 한편, 2024년 현재 영유아 교육·보육예산은 유특회계(교육세, 국고), 지방 교육재정교부금(교육청), 국고(교육부), 지방비(국고매칭)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유보통합 과정에서 관련 재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할 예정임

[표 1] 영유아 교육·보육예산(2024년)

(단위: 억원)

| 구분              | 총계      | 누리과정 비용 |               |     | 기타 교육·보육비용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예산      | 재원            | 소관  | 예산         | 재원                  | 소관  |
| 유아교육<br>(유치원)   | 55,450  | 16,797  | 유특회계<br>(교육세) | 교육부 | 39,653     | 교육비<br>특별회계         | 교육청 |
| 영유아보육<br>(어린이집) | 114,789 | 15,309  | 유특회계<br>(국고)  | 교육부 | 47,701     | 국고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1,674      | 교육비<br>특별회계         | 교육청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29,445     | 지방비<br>(국고매칭)       | 지자체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20,660     | 지방비<br>(특수보육<br>시책) | 지자체 |
| 합 계             | 170,239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139,133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자료: 교육부

[표 2] 재정 개편 방향 및 지자체 예산 이관 계획

| 2023년<br>현황                  |   |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<br>이관·지원 방향 |   | 통합모델 적용<br>개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복지부 국고                     |   | ① 교육부로 이관               |   | ①+② 별도 특별회계 신설검토<br>(가칭 ‘교육·돌봄책임특별회계’) |
| ② 유특회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② 지속지원(~'25)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시도, 시군구예산<br>(국고대응 및 자체추진) | ⇒ | ③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          | ⇒ | ③ 이관 후 지속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시도교육청 예산                   |   | ④ 지속 지원                 |   | ④ 지속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⑤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<br>등 활용 추진           |

자료: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·보육 지원사업 평가(국회예산정책처, 2024.8.)

-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에서 부담하던 국고대응 및 자체추진 특수시책예산을 이체하는 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신설함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 ‘보육 기관’에 필요한 재원이 증가할지 여부와 그 증가 규모,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가 소요 예산 규모 및 분담 주체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안 제15조는 개정안 공포 당시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경비를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함

－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비(제1호), 지역의 영유아보육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경비(제2호,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), 영유아 보육 사무의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(제3호)임

－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 취합 기준 국고대응사업비 30,318억원과 특수보육시책사업비 18,838억원 등 총 4.6조원이 이관될 것으로 추정함

○ 다만, '24년 6월에 발표된 “유보통합 실행 계획(안)”은 ‘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보장,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, 단계적 무상 교육·보육 실현, 통합연수체계 마련, 수요 맞춤 교육·보육 프로그램 강화’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('24년) 말 확정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

－ 안 제15조제2항은 각 호의 경비를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, 유보통합 실행 계획 과정에서 추가경비가 소요될 경우 교육청 등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
－ 다만,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과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국가가 증액 교부<sup>3)</sup>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

---

3)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.79%와 교육세 세입액으로 정해져 있으나, 제3조제4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증액교부할 수 있으므로 교부액이 증가할 수 있음

제3조(교부금의 종류와 재원)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(이하 “교부금”이라 한다)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.

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1. 해당 연도 내국세[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,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(稅目)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] 총액의 1만분의 2,079

수 있으나, 별도의 증액 교부 없이 기존 재원<sup>4)</sup>과 안 제15조에 따른 재원만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하던 보육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관련 교육청 예산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는 상호 간 재정지출 증감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임

- 또한, 안 제11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및 인력 이관 후에도 보육기관의 보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, 안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시·도 등의 특수한 여건에 기반한 시책사업은 법 시행후 교육부령으로 정하여 질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의 구체적 내역 및 그 규모 등에 대한 추정도 곤란함
-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 규모 및 부담 주체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며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 교부될지 여부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규모 증감 여부 등에 대한 예측에도 한계가 있어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---

2. 해당 연도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

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.

4)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금액(내국세의 20.79%와 교육세 세입액)

## I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정혜승 | 이진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정혜승 | 02-6788-4627 | hs0387@assembly.go.kr |